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(노웅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38

발의연월일: 2020. 6. 10.

발 의 자:노웅래·김민기·윤관석

장경태 • 이용빈 • 윤재갑

양경숙 • 이정문 • 김윤덕

민홍철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일부 건강장애학생에 대하여 현재 원격수업의 방식으로 교육이 제공되고 있음.

특히, 원격수업은 시설·병원 및 가정 등에서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학업을 지속할 수 있어 건강장애학생의 학습 지체 및 유급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교육형태이나, 현행법에는 원격수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.

이에 건강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원격수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설·병원 및 가정 등에서 원격수업이 체계적이고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5조제5항 신설 등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법령·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.

법률 제 호
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7항(종전의 제6항) 중 "등 순회교육"을 "등 순회교육과 제5항에 따른 원격수업"으로 한다.

⑤ 교육감은 장애정도가 심하여 각급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복지시설·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서 방송·통신·인터넷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25조(순회교육 등) ① ~ ④ | 제25조(순회교육 등) ① ~ ④ |
| (생 략) | (현행과 같음) |
| <u> <신 설></u> | ⑤ 교육감은 장애정도가 심하 |
| | 여 각급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|
| | 곤란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복지 |
| | 시설・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 |
| | 에서 방송·통신·인터넷 등을 |
| | 활용한 원격수업을 받을 수 있 |
| | 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 |
| <u>⑤</u> (생 략) | <u>⑥</u> (현행 제5항과 같음) |
|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 | <u> </u> |
| 정에 따른 순회교육의 수업일 | |
| 수 <u>등 순회교육</u> 의 운영에 필요 | 등 순회교육과 제5항에 따른 |
|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| 원격수업 |
| 다. | |